

**한동대학교 제8대 대학평의위원회**  
**2020학년도 2학기 제1차 정기회의**  
 (제1회 회의록)

구 분	평의원
의원정수	11명
재적인원	11명
참석인원	10명

**회의 일시** : 2020. 8. 12(수) 14:00

**회의 장소** : 현동홀 비전회의실

**성원**

1. 참석자 (10명)  
 도형기 의장, 성현모 의원, 조현지 의원, 김재효 의원, 황정국 의원, 민준호 의원, 최임성 의원, 우제성 의원, 김형욱 의원, 편윤생 의원
2. 불참자 (1명) : 유장춘 의원
3. 안건 관련 참석자 : 주재원 교수, 이종식 팀장, 박종심 과장, 김명호 팀장
4. 회의록 작성 : 차효성 과장(전략기획팀)

**회의 안건**

-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호선
-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(안) 심의
-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(안) 사전 보고

**의결 내용**

-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호선 : 의원들이 추천하고 동의 및 제청하여 도형기 의원이 대학평의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됨. 부의장은 도형기 의장이 부의장으로 추천된 2명의 의원과 협의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평의원의 동의를 얻어 확정함
- 한동대학교 학칙 개정(안)
  - 언론정보문화학부 학부 명칭 개정(안)에 대해 주재원 교수가 관련 추진경과와 추진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였으며, 특별한 이견이 없음을 의장이 확인하고 상정(안)으로 의결함
  - 입학전형 근거 및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내용에 대해 김명호 입학사정관팀장이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답함. 일부 규정 문구 수정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상정된 규정 내용을 수정하는 전제로 의결함

현행	상정(안)	수정(안)-평의위원회 의견 반영
제 4 장 입학 및 전과(부)	제 4 장 입학 및 전과(부)	제 4 장 입학 및 전과(부)
제 10 조 ~ 제 12 조 (생략)	제 10 조 ~ 제 12 조(현행과 같음)	제 10 조 ~ 제 12 조(현행과 같음)
제 13 조 (입학전형)	제 13 조 (입학전형)	제 13 조 (입학전형)
① 입학전형은 당해연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과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한다.	① 입학전형은 당해연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, 대학입학시행계획과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한다.	① 입학전형은 당해연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, 이 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과 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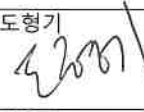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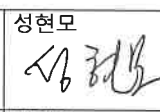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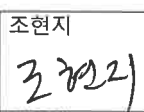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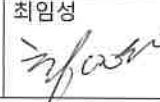
현행	상정(안)	수정(안)-평의원회 의견 반영
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 14 조 (생략)</p> <p>제 15 조 (생략)</p> <p>제 16 조 (입학허가 및 특별과정)</p> <p>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되,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제 17 조 ~ 제 18 조 (생략)</p> <p>제 19 조 (편입학)</p> <p>① 편입학은 3학년 편입학을 원칙으로 하되,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은 2학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편입학은 편입학 하고자 하는 학년의 직전 학기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모집단위별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 중 직전 학기 및 직전 학년도에 제적된 인원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모집할 수 있다.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4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5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6 조 (입학허가 및 특별과정)</p> <p>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되,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, 서류의 위조, 변조,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 입학 부정행위가 입학허가 전에 그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합격처리하고 입학허가 후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7 조 ~ 제 18 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9 조 (편입학)</p> <p>① 입학전형은 당해연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과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	<p>집요강에 따라 선발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4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5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6 조 (입학허가 및 특별과정)</p> <p>① 입학은 총장이 허가하되,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, 서류의 위조, 변조,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 입학 부정행위가 입학허가 전에 그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합격처리하고 입학허가 후에 사실이 판명된 때에도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7 조 ~ 제 18 조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9 조 (편입학)</p> <p>① 입학전형은 당해연도 교육부의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과 이 대학교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삭제&gt;</p>

현행	상정(안)	수정(안)-평의원회 의견 반영
<p>다만,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원의 제한 없이 정원의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③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다. 다만, 편입학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5퍼센트 이내이어야 하고, 당해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④ 편입학 이후 부정행위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편입학을 취소하고 학적을 말소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제 20 조 (정원외 입학)</p> <p>① 당해연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입학전형기본계획과 정원외 전형의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할 수 있다. (개정 2008. 09.01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 21 조 (생략)</p> <p>제 22 조 (보증인)</p> <p>①보증인은 당해 학생의 보호자이어야 하며 부득이한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④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, 서류의 위조, 변조,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 편입학 부정행위가 편입학허가 전에 그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합격처리 하고 편입학 허가 후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편입학을 취소하고 학적을 말소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0 조 (정원외 입학)</p> <p>① 입학전형은 당해연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, 대학입학시행계획, 대학 편입학전형 기본계획과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1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2 조 (보증인)</p> <p>①대학 입학 전형에 따라 보증인을 둘 수 있으며, 보증인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④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, 서류의 위조, 변조, 대리시험 또는 시험부정행위 등 편입학 부정행위가 편입학허가 전에 그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합격처리 하고 편입학 허가 후에 사실이 판명된 때에도 편입학을 취소하고 학적을 말소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0 조 (정원외 입학)</p> <p>① 입학전형은 당해연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, 이 대학교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, 교육부의 대학 편입학전형 기본계획과 이 대학교의 모집요강에 따라 선발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1 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22 조 (보증인)</p> <p>①대학 입학 전형에 따라 보증인을 둘 수 있으며, 보증인</p>

현행	상정(안)	수정(안)-평의원회 의견 반영
<p>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, 기타 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은 당해 학생의 보호자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, 기타 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은 당해 학생의 보호자이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 중 학비, 기타 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로 한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○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(안) 사전 보고

- 이종식 예산팀장이 코로나 19 특별장학금 지급 계획(안)에 대하여 그 취지와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원들의 질문에 상세히 답함
- 이번 장학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이번 학기에 한해 지원하는 장학금임을 설명함
- 좋은 취지의 장학금 지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잘 소통되어 공동체가 관련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
- 장학금이 등록금 납부 시 감면으로 지급될 경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감면 금액만큼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학생지원팀(장학담당부서)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: 국가장학금은 최대 2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등록금은 장학금 최대 혜택 금액을 상회하므로 코로나 19로 인한 감면 혜택으로 국가장학금 혜택이 상쇄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함

의견	도형기 	평의원	성현모 	평의원	유장춘 <불참>	평의원	조현지 	평의원	김재효 김재효	평의원	황정국 황정국
평의원	김형욱 김형욱	평의원	최임성 	평의원	민준호 민준호	평의원	편윤생 편윤생	평의원	우제성 